

대구지방법원 2024. 6. 27 선고 2023나31812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4. 6. 27 선고 2023나318121 판결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. 8. 10 선고 2020가단200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필재(소송구조)

피고, 피항소인 1.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

담당변호사 김용휘

2. C

변론종결 2024. 5. 30.

판결선고 2024. 6. 27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. 8. 10. 선고 2020가단2005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선택적으로, 원고에게, 피고 B은 62,337,370원, 피고 C은 6,929,5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,295,967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11. 5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‘2. 고치는 부분’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5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차. L은 2022. 9. 20. 대전지방법검찰청 서산지청 2022형제5939호 사건에서, 피고 C은 2023. 12. 26. 대구지방법검찰청 2023형제43413호 사건에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(혐의없음, 증거불충분)을 받았다. 피고 B은 2021. 2. 26.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재 소재불명임을 이유로 2024. 3. 29. 수원지방법검찰청 평택지청 2023년 형제24107호 사건에서

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 기소중지 및 지명통보 처분을 받았다.』

○ 제1심판결 5면 6행의 [인정 근거]에 “갑 제32호증, 을가 제6, 7호증의 각 기재”를 추가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광진, 판사 정주희, 판사 김아영